



##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2013.10.24 | 여경훈\_ 새사연 연구원 | noreco@korea.ac.kr

순환출자, 자본시장법, 금융빅뱅, 대부업체, 감독부실, 자율규제, 규제공백, 규제 차익 등등 동양사태를 통해 한국경제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할 만큼 온갖 제도적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동양사태의 교훈은 경제민주화와 금융규제 강화가 한국경제의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 왜 MB정권에서 재벌계열사 CP문제가 자주 발생하는가?

2011년 저축은행 사태로 큰 홍역을 치른 것이 엇그제인데, 최근 재벌 계열사 부도와 CP 관련 투자자 피해 사태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2011년 LIG, 2012년 웅진, 그리고 2013년 동양 사태에 이르기까지. 따라서 왜 최근 대기업 CP 관련 금융사건이 자주 발생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CP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1] 연도별 CP 발행 잔액 추이(단위, 조 원)

	04	05	07	09	10	11	12	13.10
CP	16	13.3	28.8	31.6	33.4	41.8	51.9	73.1
ABCP	3.4	8.1	26.8	31.2	40.2	47.2	62.0	78.7
합계	19.4	21.5	55.6	62.8	73.6	89.0	113.9	151.8

\*자료: 금융감독원, 예탁결제원

CP시장은 카드 사태로 위축된 후 2005년부터 빠른 속도로 회복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최근 5년 여 동안 CP 잔액은 29조에서 73조로 2.5배 증가하였다. 그리고 ABCP는 27조에서 79조로 2.9배 증가하였다. 이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과 관련이 있다.



어음법은 기본적으로 상거래와 관계된 어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간편한 발행절차를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음 요건만 충족하면 이사회 의결, 발행기업 등록 및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발행이 가능하며 발행금액에도 법적 한도가 없다. 반면 어음법상 배서의무, 분할양도 금지 등 유통과정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자본시장법에서는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준적이고 정형화된 투자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하고, 중개, 매매 등 유통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엄격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sup>1)</sup>

CP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이면서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이라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 즉 CP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발행 및 공시의무 절차가 어음법상 면제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특히 2009년 2월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발행자 요건, 신용평가등급, 만기, 최저액면금액 등의 발행 규제가 대거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통상 CP는 기업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만기 제한(1년)이 폐지되면서 만기 1년 이상 장기 CP와 ABCP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09년 5%에 불과하던 만기 1년 이상 CP는 현재 44조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회사채 발행에 요구되는 이사회 의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복잡한 발행 절차 및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이득에 더불어, 각종 발행 규제 폐지는 CP 시장에 날개를 달아준 꼴이 되었다. 따라서 일부 부실 대기업들은 회사채 대신 CP를 점차 장기 자금조달 수단으로까지 활용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한편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면서,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계열회사 발행 증권 취득을 금지하는 신탁업 감독규정 또한 폐지되었다. 구 신탁업 감독 규정 제34조 13호에 의하면, “신탁회사는 계열회사가 발행 또는 보유한 유가증권을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되었다.

동양증권은 2001년 11월 동양현대증권 합병 후 부실계열사의 CP를 인수한 다음, CP를 분할하여 소액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2006년 금융감독원이 어음법 위반으로 CP 분할 판매를 금지시키자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계열사 CP를 편입하는 방식으로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CP는 어음법상 유통과정 규제를 받기 때문에 회사채와 달리 분할 판매, 이른바 쪼개기가 금지된다. 어음법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만든 상품이 바로 특정금전신탁이다. 그리고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계열사 CP 편입에 날개를 달아 준 규제완화가 바로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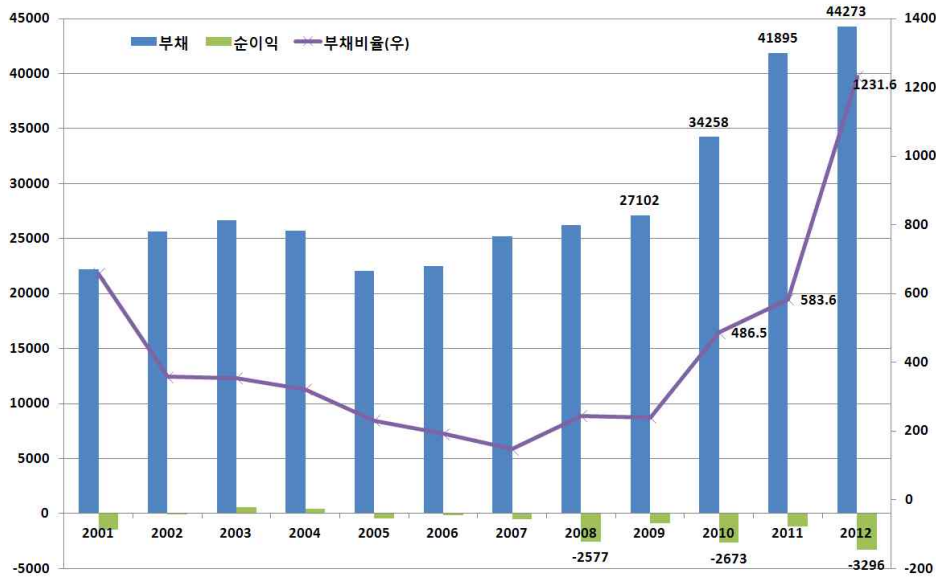
1) 김홍미(2009), 기업어음제도에 관한 소고, KIS Credit Monitor.



### 부동산침체, 순환출자, 그리고 주채무계열

동양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시멘트는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2008년부터 영업적자가 급격히 늘어났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2008년부터 비금융 계열사의 영업적자 합계는 2000억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2008~9년까지 200% 수준이던 부채비율이 최근 1200%까지 급격히 증가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림1] 동양그룹 부채비율 추이(단위, 억 원)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하나는 순환출자를 통한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성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계열사 주식매입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1년 이후 재무구조가 부실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각각 3336억, 3091억에 달하는 금액을 계열사 주식매입에 사용하였다.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동양과 동양증권의 지배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예를 들어 2001년 기준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동양캐피탈의 동양증권 지분율은 불과 1%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9월30일, 두 기업의 법정관리 신청 당시 지분율은 34%로 최대주주에 이르렀다. 사실상 금융지주회사인 동양증권을 지배하기 위해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시장성자금을 차입하여 주식을 매입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양레저는 2005년 유상증자(460억 원)를 통해 동양 지분 19.6%를 취득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동양증권 주식을 담보로 차입하여 (주)동양 지분 2%를 취득하기도 한다. 2007년 이후에는 수차례의 장내매수를 통해 (주)동양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현재 지분을 36.3%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음으로 주채무계열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회사채와 CP를 발행하여 은행 차입을 줄였다.

[표2] 동양그룹 신용공여와 부채총액 추이

	2008년 말	2009년 말	2010년 말	2011년 말	2012년 말
주채무계열 선정기준액	1조2107억	1조3946억	1조3962억	1조4622억	1조6152억
동양그룹 신용공여액	1조3899억	1조2495억	9166억	9938억	9120억
동양그룹 부채총액	2조6223억	2조7102억	3조4258억	4조1895억	4조4273억
회사채·CP 발행액	NA	1조9230억	1조9344억	3조1452억	5조1447억
신용공여/ 부채총액	53%	46.1%	26.8%	23.7%	17.7%
선정대상 여부	해당	제외	제외	제외	제외

\*자료: 김영환 의원실, 동양그룹 부채총액: 비금융계열사 대상(공정거래위원회)

위 표에서 보는 것처럼, 동양그룹은 2010년부터 주채무계열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8년 말 신용공여액 1조3889억에서 작년 말 신용공여는 9120억으로 34% 줄었다. 반면 그룹 전체의 부채총액은 2.6조에서 4.1조로 거의 두 배 증가하였다. 따라서 전체 부채총액에서 신용공여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말 53%에서 작년 말에는 18%까지 줄었다.

매년 2월 금감원에서 선정하는 주채무계열 대상에 포함되면 주채권은행은 매년 4월말까지 재무구조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재무구조 취약계열은 매년 5월말까지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해야 하고 임원 보수 제한 등 각종 경영활동 상 규제를 받게 된다.

현행 주채무계열 제도에서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는 은행, 보험사, 종금사, 그리고 여신전문금융회사로 한정된다. 따라서 동양그룹은 계열사인 증권사와 대부업체를 통해 회사채와 CP, 그리고 차입을 통해 은행 여신을 상환하여 규제에서 벗어났다. 따라서 신용공여는 계속 감소하는데 회사채와 CP 잔액은 지속적으로 늘게 된다. 주채무계열 산정 대상에 증권사의 회사채와 CP, 그리고 대부업체의 여신이 포함되지 않는 제도상의 허점을 교활하게 이용한 것이다.



2010년 지주회사 격인 동양이 자본잠식에 빠지고, 작년 말 기준 18개 비금융 계열사 중 8개 기업이 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동양그룹은 유동성 위기가 아니라, 사실상 부채가 자산을 구조적으로 초과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CP 원리금 상환을 위해 추가로 CP를 발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부채비율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 재벌의 새로운 사금고, 대부업체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의하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제50조)’에 따라 대주주, 계열사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 계열사 주식소유 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자금 조달과 운영 상 카드사, 할부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과 대부업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나 현행 대부업법에는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규정이 없다.

실제 동양파이낸셜대부(이하 동양대부)는 2002년 동양카드 기업분할에 따라 할부금융업으로 등록한 다음, 2004년 할부금융업 등록을 반환하고 대부업체로 전환하였다. 검사 출신 현재현 회장은 법의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여,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해 그룹의 취약한 순환출자 고리를 완성시키고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을 담당하게 하였다.

2008년 이후 동양증권에 대해서는 다섯 차례 검사를 통해 CP 감축에 관한 MOU 체결과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감독규정 조차 없는 동양대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 검사도 실시되지 않았다.

(주)동양은 2010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자 2011년 3월 긴급히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동양대부가 1600여억 원을 들여 실권주를 인수하여 (주)동양의 2대 지주(26.2%)가 되었다. 동양의 1대 지주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동양레저로 34.8%의 지분을 갖고 있다. 동양레저의 최대주주는 현재현(30%)과 아들 현승담(20%)이다.

(주)동양→동양인터내셔널→동양증권→동양파이낸셜대부→(주)동양으로 이어지는 신규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여, 현재현→동양레저→동양을 통한 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한 것이다. 현재 동양대부는 (주)동양(26.2%), 동양레저(10%), 동양시멘트(3.6%), 티와이머니(1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티와이머니는 2010년 9월, 동양파이낸셜 채권추심 부문을 분사하여 설립한 또 다른 대부업체다. 현재현이 자본금 10억 중 8억을 출자하여 80%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양과 동양대부가 각각 10%를 보유하고 있다. 티와이머니는 금년 2월 동양네트웍





스 유상증자(114억)에 참여하여 지분 23.7%를 취득하면서 최대주주가 되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온라인 등 5개의 그룹 신사업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동양그룹은 2개의 대부업체를 통하여 취약한 현회장의 지배구조를 강화하였다. 사실상 2개의 대부업체가 동양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노릇을 했던 것이다. 또한 동양대부는 동양과 동양시멘트로부터 CP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의 CP를 인수하거나, 여신을 제공하여 그룹 내 계열사 지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 제2의 동양사태 어떻게 막을 것인가?

최근 국정감사 질의 과정에서 금감원장은 동양처럼 금융계열사를 통해 시장성 자금을 조달하는 대기업이 네 곳에 이른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최근 LIG, 웅진, 동양 등 연이은 재벌계열사 부도 사태를 고려하면 언제든지 제2의 동양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략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은산분리를 넘어서 실질적인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

대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할 경우 금융계열사를 자회사로 소유하고 있다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행위는 기업에 이익이 되지만, 계열금융사의 부실과 투자자 불이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금융회사에 문제가 생겨 정부가 공적자금을 투입할 경우 국민과 금융계열사 간 이익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MB 정부는 2009년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하여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한도를 확대하고 재벌계열사의 금융투자업 진출을 무한대로 허용하였다. 사실상, 금융회사가 재벌의 사금고 역할이 되는 것을 방조한 것이다. 동양 사태는 동양증권과 동양대부가 그룹 오너의 사금고와 지배구조 강화 역할을 담당하고 금융당국이 이를 묵인하거나 방치하면서 최악의 금융 사기사건으로 발전하였다.

현행 은행업법에 의하면 산업자본(제조업)의 은행 소유에 대한 규제, 이른바 은산분리가 존재한다. 또한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제조업 계열사 소유 제한,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 제한 등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금산분리가 존재한다.<sup>2)</sup>

2) 순환출자의 해소,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은 금융지주회사, 일반지주회사를 분리, 지주회사 규제를 통해 금산분리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둘의 해소는 별개다. 이 글은 금융 규제와 감독 차원의 순환출자 관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신규순환출자금지와 기존순환출자금지가 대립 중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국회와 공정위 모두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므로 조속히 처리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우선 의결권을 제한한 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 규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2009년 자본시장법 이후 산업자본과 금융계열사 간 영업(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금융자본과 투자자의 이해관계 상충, 계열사 부실 전이, 경제력 집중, 규제와 감독의 실효성 저하, 금융시스템 불안정 등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 금산분리를 실시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대기업집단을 금융지주회사와 일반금융지주회사 분리 체계로 전환하여 지주회사 규제를 강화하거나, 산업자본의 증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제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현재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실시하고 있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를 모든 금융회사에 도입하여 금융계열사가 대주주의 사금고 역할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대칭적 규제공백을 해소해야 한다.

앞서 지적한 것처럼, 회사채와 CP 발행의 급격한 증가, 대부업체를 통한 지배구조 강화와 계열사 간 자금거래 등의 문제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비대칭적 규제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사채와 CP 등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이 늘어나는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주채무계열 신용공여 산정 대상 금융회사에 증권사와 대부업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은 2002년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여신전문금융업을 새로 포함시킨 이후 지난 10년 동안 한 번도 보완되지 않았다. 따라서 증권사 위탁계정과 신탁계정이 보유한 회사채와 CP, 그리고 대부업체를 통한 모든 여신을 선정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할부금융업체와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는 대부업체는 자금 조달과 운영 상 아무런 차이가 없다. 최근 저축은행이 몰락하고 대부업의 영업이익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도 비대칭적 규제공백과 무관하지 않다. 사실상 규제의 무풍지대인 대부업체는 규제차익을 노려 저축은행의 소매영업 기반을 잠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저축은행은 대주주에 대한 여신공여가 금지되고, 여신전문금융업은 자기자본 한도 내로 여신공여가 제한된다. 반면 대부업체는 대주주 거래 제한이나 자격심사에 관한 규제가 전무하다. 최근 일부 부실 재벌들은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통한 자금조달을 확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여신전문금융업 또한 재벌의 사금고 역할이 되지 않도록 자격심사와 거래 제한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금융위는 금융산업 발전에 치우친 나머지, 투자자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나왔다. 18대 국회부터 자본시장법 개정 연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금산분리 강화 등 소비자보호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현된 것은 하나도 없다.

현재 불완전판매의 경우 입증책임이 투자자에 있으므로, LIG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 소비자보호가 실현되기는 매우 어렵다. 금융상품 사전허가제, 투자 위험성 분류 강화, 입증책임 금융회사 전환 등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가 조속히 실행되었다면, 동양그룹이 무너져도 이번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적 민간기구로서, 예산의 90% 이상이 감독을 받는 금융사들의 부담금을 통해 운영된다. 따라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규제완화 요구,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국민의 이해관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독립적 금융소비자보호원이 현행 금감원처럼 규제포획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청(CFPB)처럼 중앙은행으로부터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 또한 원장은 국회 청문회와 인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금융위로부터 인사권의 독립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규제포획과 규제퇴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반복되는 금융사태의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규제포획이 자리 잡고 있다.

금감원은 2008년 11월 동양증권 종합검사를 통해 신탁자금으로 계열회사 지원 목적의 계열회사 발행 CP를 취득하는 문제를 인지하였다. 이는 신탁업 감독규정에 위반하는 사항이지만, ‘기관주의’ 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또한 2009년 5월 7625억 원에 달하는 계열사 CP를 확인하고, 반기마다 500억 원, 총 2500억 원을 줄이기로 MOU를 체결했지만 제대로 감독하지도 못하였다. 이후 네 차례 검사를 통해 계열사 CP 편입과 불완전판매 문제를 충분히 인지했지만, 금융투자업 개정을 건의한 것은 문제 인지 후 4년이 지난 작년 7월이었다.

금융위 또한 애초 금년 초 규정 개정이 완료될 것이라 발표했지만, 실제 4월 말이 되어 서야 규정 개정을 완료하였다. 또한 애초 3개월 유예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여 선의의 피해자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다.<sup>3)</sup> 특히 금융투자업 개정이 늦어진 데는 대통령 직속의


3)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 현장에서 금융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도산에 따른 시장 혼란 가중보다는 낫다고 판단” 하여 유예기간을 늘렸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는 유동성위기와 지급불능위기를 혼돈한 것이다. 동양은 이미 지난해부터 사실상 지급불능위기에 빠졌기 때문에 신속한 구조조정과 선의의 피해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굳이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는 없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적지 않은 몫을 담당하였다.<sup>4)</sup> 따라서 규제강화의 시대적 추세에 조응하여, 규제완화를 위해 설치한 규제개혁위원회를 폐지시켜야 한다.

동양 사태에서 보듯이 금융 감독 당국은 과거 금융위기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어버리고, 이제는 망상으로 판명난 '자율규제'의 정책기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다. 이들이 자율규제의 망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훌륭한 금융 감독 제도와 법률을 갖춘다고 해도 제2의 동양 사태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순환출자, 자본시장법, 금융 빅뱅, 대부업체, 자율규제, 규제공백과 규제차익 등등 동양 사태를 통해 한국경제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할 만큼 온갖 문제들이 터져 나왔다. 동양 사태는 경제민주화와 금융규제 강화가 한국경제의 시대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고 있다. 

4)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에는 6명의 위원이 있는데, 그 면면을 보면 시장의 자율규제를 신봉하는 학자들로 가득하다. 규제개혁위원회의 회의록을 보면, 계열사 간 거래집중 완화를 위한 금융투자업 개정안 5개 안건 중 3개 안건이 중장기적으로 시장규율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규제 일몰(2년)을 권고하였다. 또한, 애초 3개월 유예기간을 “일부 업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달라고 요구하여 6개월로 조정하기도 하였다.

금융위는 2011년 12월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증권·보험·카드사 등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만들었지만, 지난해 초 규개위는 “시장경제의 근간인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를 권고하였다. 결국 금융위는 해당 내용을 삭제한 채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경향신문, 10/10, 금감원과 규제개혁위가 동양사태 키웠다.)



2013년 새사연의 ‘이슈진단’ 목록

2013년 10월 24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이슈진단	2/7	사교육비를 더 늘리거나 아예 포기하거나	김병권
이슈진단	2/15	20대 청년층 취업자 감소 양상 산업별, 직업별 분석	김수현
이슈진단	2/22	‘나 홀로 아동’ 대책은 없나	최정은
이슈진단	3/9	스위스 국민투표, “경영자 보수를 제한하라”	김병권
이슈진단	3/11	차베스 사후, 베네수엘라 경제는 지속 가능할까?	여경훈
이슈진단	3/11	경제가 부진해도 주가가 오르는 이유	김병권
이슈진단	3/13	여성 노동의 현실에 대한 진단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3/18	주주총회 시즌에 생각해 보는 경제 민주화	김병권
이슈진단	3/23	유럽의 숨겨진 분단국가 키프로스의 비극	김병권
이슈진단	4/2	성평등지수로 본 젠더불평등	최정은
이슈진단	4/3	부동산으로는 경기를 살릴 수 없다	김병권
이슈진단	4/11	한국 경제와 이스라엘 경제의 유사점과 차이점	김병권
이슈진단	4/24	박근혜 정부의 보육정책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5/2	전 세계를 속인 엑셀 불황	여경훈
이슈진단	5/9	정년 연장법 통과 쟁점과 과제	김수현
이슈진단	6/7	메디텔, 멈추지 않는 의료민영화	이은경
이슈진단	6/12	힘난한 고용률 70%의 길과 고용의 ‘질’	김병권
이슈진단	6/17	아베노믹스, 디플레이션, 그리고 고령화	여경훈
이슈진단	6/27	끝이 보이지 않는 최저임금 줄다리기	김수현
이슈진단	8/13	최근 전세가격 동향과 정책 방향	여경훈
이슈진단	10/8	인구고령화와 부동산 시장 전망	여경훈
이슈진단	10/11	2014년 정부예산안: 보육 및 일가정 양립 평가	최정은
이슈진단	10/14	시간제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없는 이유	김수현
이슈진단	10/24	동양 사태는 왜 발생했는가?	여경훈